

2026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  
신청안내서



# 목 차

<b>I. 용자사업 지원계획</b> .....	<b>1</b>
① 2026년도 용자지원 개요 .....	3
② 용자 심사 계획 .....	9
③ 용자 배정 계획 .....	11
④ 용자 사후관리 계획 .....	13
<b>II. 용자사업 제도개선 사항</b> .....	<b>15</b>
① 전년 대비 제도 개선 사항 .....	17
<b>III. 용자신청 방법(KASFO 용자시스템)</b> .....	<b>21</b>
① 신청 절차 .....	23
② 용자신청서 작성 방법 .....	24
• KASFO 용자시스템 접속, 로그인, 용자신청 .....	24
• KASFO 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작성 .....	24
• KASFO 용자시스템 사업계획서 작성 .....	26
• KASFO 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제출 .....	28
• (서식1) 사학진흥기금 용자신청서 .....	29
③ 용자신청서 첨부자료별 작성 방법 .....	31
• (서식2) 사업계획서 .....	31
• (서식3) 부채현황 .....	41
• (서식4)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	42
• (서식5)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	45
• (서식6) 회계별 미지급(비용)금 변동 현황 .....	47
• (서식7) 자산 보유 현황 .....	48
• (서식8)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 .....	49
<b>IV. FAQ</b> .....	<b>51</b>
【 별첨 】 2026년도 용자사업 심사표 .....	57



# 용자사업 지원계획





# 용자사업 지원계획

## 1 2026년도 용자 지원 개요

### 1 예산 규모 및 배정 방법

- (예산 규모) 총 178,646백만원
  - ※ 예산 규모는 '26년 예산 정부안 기준으로 연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배정 방법

구분	배정 방법		
정기 배정	당해연도 예산을 「정책지원 용자」분야에 60%, 「환경개선 용자」분야에 40% 비율로 배분*을 원칙으로 함		
	* 배분 비율은 용자 신청 현황,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사업 유형	정책지원 용자	환경개선 용자
	예산 배분	60%	40%
예비 배정	당해연도 예산 규모의 50% 범위 내에서 예비 순위를 설정하고, 정기배정교의 포기(취소)가 발생하면 예비 순위에 따라 배정		
	※ 단, 예비배정 범위에 사업 신청금액의 일부만 포함될 경우, 해당 사업 신청금 전액을 예비배정함		
	※ 예비배정은 정기배정과 추가배정 시 각각 설정		
추가 배정	정기배정교 및 예비배정교 배정 이후 포기(취소)가 발생하는 등 용자 예산이 남는 경우 추가신청을 받아 배정		
	※ 추가배정은 수요에 따라 정기배정 시의 분야별 예산 배분 비율과 상이할 수 있음		

### 2 지원 대상

- 「사립학교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법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및 학력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3 지원 사업

#### 1 [분야1] 정책지원 용자 사업

사업 유형	세부 내용
① 혁신선도 용자	<p>고등교육(연구) 발전과 신산업(AI·바이오·방산·에너지 등) 및 정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분야 혁신·선도를 위한 장기·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p> <p>[사업 유형 예시] 산학연 복합센터 신축, AI 컴퓨팅 센터 인프라 구축, AI기반 방산시스템 연구환경 조성, 반도체 실습을 위한 클린룸 조성,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R&amp;D센터 구축 등</p>
② 지역발전 용자	<p>학교 소재 지역과의 상생,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지·산·학) 간의 연계·협력 사업</p> <p>[사업 유형 예시] RISE 대학의 지역산업 기반 산학협력 시설자금(연구센터 구축 등), 글로벌 대학의 특화 분야 시설투자 사업,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금 등</p>
③ 구조개선 용자	<p>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경영을 위한 적정규모화, 수입 확대 및 비용 절감 등 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시설·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사업 등</p> <p>[사업 유형 예시] 학과 통폐합 등에 따른 교직원 명예퇴직금, 학교 통합에 따른 전산시스템 재구축 및 고도화 등, 수입 다변화를 위한 유휴부지 매각·개발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사 신축 등 ※ 학교 구조개선과 무관한 일반 교육환경개선 자금은 「2 환경개선 용자」로 신청</p>

#### 2 [분야2] 환경개선 용자 사업

사업 유형	세부 내용
① 환경개선 용자	<p>일반적인 사학기관 교육환경(노후시설)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확충, 일반운영비 등 사업</p> <p>[사업 유형 예시] 노후 교사시설 신증축 및 리모델링, 실습 장비·기자재 확충, 행정 및 교육지원 인프라(전산시스템 등) 개선, 부속병원 환경 개선,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확충 사업 등, 교육환경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운영비 등</p>

## 4 용자 신청 및 지원 한도

- (용자 신청) 용자 목적사업의 총사업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신청
- (신청 제한) 용자 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지원 한도)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 적용

MIN(①, ②)

- ① 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 : 최대 연 300억원(상환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하되, 상환 회계가 2개 이상인 경우 더 낮은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함)

상환능력평가	상위 50% 이상	하위 50% 이하 및 중등이하교
당해 한도*	300억원	20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용자 배정 합산액

- ②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용자신청 마감일 용자금 잔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

규모별	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중등이하교만 설치·운영하는 법인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법인기준 상한액	900억원	8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 법인+교비+병원회계 용자금 잔액(25년도 정원증원 의대용자 및 병원 필수의료 용자 지원액 제외)

## 5 용자 조건

- (이자율) 용자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기준 금리) 재단 이자율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리(분기별 변동) 적용
  - (사업별 적용 금리)

(가) 0.2%p 가산금리 적용	(나) 기준금리 적용
학교법인 수익사업* 용자 및 해당 사업의 대환대출	(가) 이외의 모든 사업

\* 예 : 수익용 건물 매입, 수익사업체(장례식장 등) 건물 리모델링 등

- (연체이자율) 해당 분기 용자이자율 + 3%p
- (사용시기) 용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 (상환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 단, 거치기간은 최대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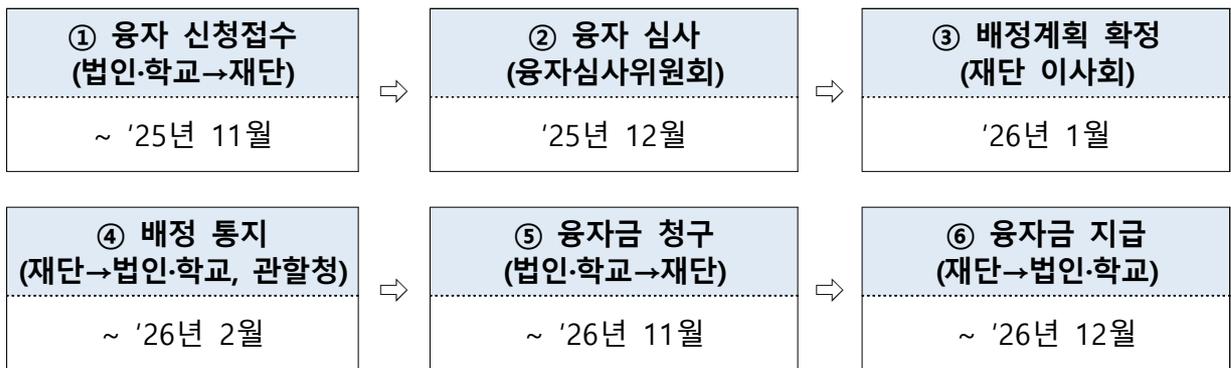
- (특약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으로 명시 및 이행여부 점검

사업 내용	특약 사항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또는 수익사업 (대환대출 제외)	용자 지원 수익용기본재산(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80%** 이상 학교 전출 * 수익금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입력' 외 별도 기준에 의함 ** 전출 비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용
대환대출 사업 (법인·학교·병원회계)	용자 수혜로 발생한 이자 절감액* 교육 재투자 * 이자 절감액 : 용자배정액 x (기존 대출금리(최종금리) - 용자 시행연도의 평균 이자율)
건축적립금(임의) 500억원 이상 대학의 시설사업 (신증개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	용자 수혜액의 100% 이상 건축적립금 사용 ※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하며 대환대출 사업은 적용 제외
구외 교사시설 임차보증금	용자금 상환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자금 즉시 회수

※ 특약사항 미이행 시 용자금 회수 또는 담보 (추가)설정 등의 제재 부여 가능

## 6 용자 지원 방법

- (용자금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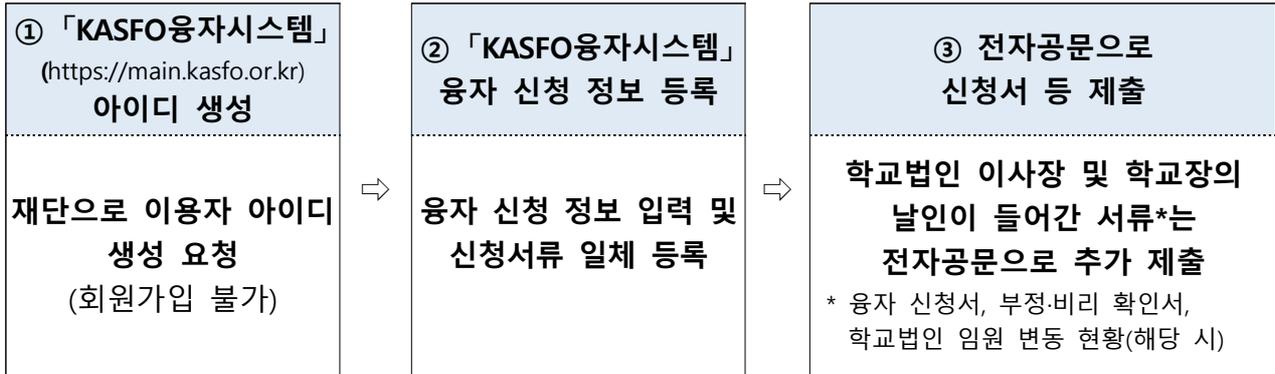


용자금 포기(취소) 자원 발생 시, 위 지원절차에 따라 추가신청 접수 실시(안내 별도)

- (용자금 청구) 청구서류\*를 KASFO 용자시스템 및 전자공문으로 제출  
\* 용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 공문, 용자사업 관련 계약서 등  
※ 용자금 청구 세부 절차는 「용자금 사용 안내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용자금 지급) 학교(법인)가 지정한 용자금 전용계좌로 용자금 이체

## 7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방법) KASFO 사용자시스템 및 전자공문을 통해 신청 접수



- (신청 서류)

구분	신청 서류	비고
필수	① 용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및 성과계획[신규] 포함) ③ 부채 현황 ④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당해연도 용자신청액 상환계획[신규] 포함)	⑤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⑥ 회계별 미지급금 변동 현황 ⑦ 자산 보유현황[신규] 재단 서식 활용
	⑧ 자체(세부) 사업계획서 또는 운영비 집행계획서(운영비 용자신청 시)	
선택	⑨ 학교법인 임원 변동 현황(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만 해당)	재단 서식 활용

※ 이 밖에 용자 신청기관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사업명 구체화) 용자신청서에 사업명 기재 시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사업명 작성 필요

※ 예 : 교사 신증축(X) → 제2공학관 신축(O)/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증축(O)  
 대학 운영비(X) → 대학 구조개선에 따른 교직원 명예퇴직금(O)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부정·비리 사항 등 용자 신청 서류 일체에 대한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용자 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구외 교육시설 임차보증금)** 용자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재학생의 기숙사 입주 지원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등 권리 확보 수단 마련 후 지급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연 2회(1, 2학기)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운영비 신청)** 운영비 용자 신청 시 용자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채용계약서, 고지서 등)를 제출해야만 용자금 지급 가능
- **(학교(캠퍼스) 이전사업)** 학교이전 자금은 관할청의 승인을 이미 득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 사업만 용자 신청 가능
  - 선취 담보 조건으로만 용자금을 지급하며, 중등이하교(법인)는 용자금 지급 방법\*을 재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예 : 계약 상대방에게 용자금 직접 지급 등
- **(용자 신청사업 유형 선택)** 시설물 용도나 사업 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연면적, 시설물에 설치된 학과 종류, 시설물의 이용자(수혜자) 규모 등이 50%를 초과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사업 유형 선택
- **(용자 신청사업 유형 변경)** 용자신청 시 선택한 용자 유형이 해당 유형의 목적, 지원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 조정, 변경하여 심사·배정할 수 있음

## 2 용자 심사 계획

### 1 기본 원칙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심사

### 2 용자 심사 기준

- (상환능력평가) 상환회계별 7~9개 항목 총 100점 만점

대학(교비회계)	대학(법인회계)	대학(부속병원회계)	증등이하(초·중·고)	증등이하(유치원)
1. 학생 등록률 추세(20점) 2. 등록금의존율(10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4. 기본재산 규모(10점) 5. 적립금 규모(10점) 6. 차입금 의존율(10점) 7. 운영이익(20점)	1. 수입대비 지출비율(10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3. 운영차액 규모(10점) 4. 기본재산 규모(20점) 5. 적립금 규모(10점) 6. 차입금 의존율(10점) 7. 운영이익(20점)	1. 영업이익률(10점) 2. 유동비율(10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4. 이자배상 비율(10점) 5. 기본재산 규모(10점) 6. 적립금 규모(10점) 7. 차입금 의존율(10점) 8. 운영이익(20점)	1. 재산 및 사업수입 비율(10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3. 재산 및 사업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10점) 4.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10점) 5. 운영차액규모(10점) 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10점) 7. 세입규모(10점) 8. 이월금 규모(10점) 9. 차입금 의존율(10점)	1. 정원내 재원율(10점) 2. 재산 및 사업수입비율(15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20점) 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15점) 5. 세입규모(15점) 6. 이월금 규모(15점) 7. 차입금 의존율(10점)

※ 소수점 처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심사 가.감점)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① [기관 기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100% 충족한 사학기관 : 5점	① [기관 기준] 최근 2년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사학기관 - 1차 위반 : △10점 - 2차 위반 : △15점
② [기관 기준] 비수도권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관심지역 제외) 소재 대학 - 비수도권 : +10점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제외) : +15점	② [기관 기준] 최근 3년간 연체 실적이 있는 사학기관 - 30일 초과 장기연체 : △10점 - 30일 이하 단기연체 : △5점
③ [사업 기준] 지자체 및 지역 주력산업기관과의 협력(사업 선정, 협약 체결) 사업 : +10점	
④ [사업 기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과 관련한 사업 : +10점	

○ (용자배제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배제 사항	<p>① 「용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용자 배제 사항 중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p> <p>가.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p> <p>나. 당해 연도에 학생 모집을 못하는 신설학교의 사업</p> <p>다. 학교이전사업 중 이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p> <p>라. 용자 신청일 현재 기존 용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인 학교</p> <p>마.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p> <p>다만,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는 위의 “마”호에 따른 용자 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p> <p>※ 단, 상환회계가 “부속병원회계”인 경우 병원장의 부정·비리에 대해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 적용</p> <p>② 최근 3년간 정원 내 학생 충원율(신입생·재학생) 70% 미만 이력이 있는 대학</p> <p>③ 용자신청 마감일 현재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정산된 사업(대환대출사업 제외)</p> <p>④ 심사(상환능력평가) 결과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대학 :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에 포함되는 학교</p> <p>※ 단,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가능</p> <p>나. 중등이하교 : 상환능력평가 결과 40점 미만교</p> <p>⑤ 최근 3년간 목적 외 사용에 따라 용자금 회수조치가 취해진 학교 중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결정한 사업</p> <p>⑥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학(전문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p> <p>⑦ 용자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학교는 포기 연도 이후 최대 3년간 용자 신청 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기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용자 배제(단, 지진·화재 등 재난·안전 피해 복구 사업은 제외)</p> <p>⑧ 용자 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대학알리미 공시기준일)</p> <p>⑨ 결산상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학기관은 용자심사 전까지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 배제</p> <p>⑩ 학교(캠퍼스) 이전 사업 중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및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 사업</p> <p>⑪ 운영비 중 관할청으로부터 확정 통보된 체불임금, 체납세금 등 확정 채무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⑫ 기타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p>
제한 사항	<p>① 교비회계의 임의건축적립금이 500억원 이상인 대학이 시설자금(신·증·개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으로 용자 신청 시 건축적립금 사용액 만큼만 용자 지원</p> <p>※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하며 대환대출 사업은 적용 제외</p> <p>② 교육비 환원율이 일정수준(대학 100%, 전문대학 95%)이상 되지 않는 경우 미달한 비율 만큼 용자 제한</p> <p>※ 교육비 환원율=총교육비*/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제외)</p> <p>* 총 교육비 및 등록금수입은 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름</p> <p>③ 기타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p>

### 3 용자 배정 계획

#### 1 용자 배정 기준

- 계속사업, 사업 유형,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심사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우선순위	세부 내용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5년도 정기배정 시 '26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년을 끝으로 계속사업 제도 종료('26년도 부터 신규 계속사업 미선정)</li> <li>※ 계속사업 우선배정액은 사업 분야별 예산의 50% 내에서 배정하며 당해연도 용자지원 계획에 따라 심사등급, 배제·제한사항 적용 후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정액을 정함</li> </ul> </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사업 유형별 우선순위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분야</th> <th style="width: 40%;">환경개선 용자</th> <th style="width: 50%;">정책지원 용자</th> </tr> </thead> <tbody> <tr> <td>사업 유형</td> <td>(2-1-1순위) 환경개선 용자</td> <td>(2-1-1순위) 혁신선도 용자 (2-1-2순위) 지역발전 용자 (2-1-3순위) 구조개선 용자</td> </tr> </tbody> </table> </li> <li>• (2-2) 사업 유형 내 계약이 체결된 사업* 최우선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인건비 등 운영비와 대한대출 제외</li> </ul> </li> </ul>	분야	환경개선 용자	정책지원 용자	사업 유형	(2-1-1순위) 환경개선 용자	(2-1-1순위) 혁신선도 용자 (2-1-2순위) 지역발전 용자 (2-1-3순위) 구조개선 용자
분야	환경개선 용자	정책지원 용자					
사업 유형	(2-1-1순위) 환경개선 용자	(2-1-1순위) 혁신선도 용자 (2-1-2순위) 지역발전 용자 (2-1-3순위) 구조개선 용자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지원 대상별 우선순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순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li> <li>(3-2순위)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li> <li>(3-3순위) 부속병원(협력병원 제외)</li> <li>(3-4순위)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학력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경영 학교법인 포함)</li> <li>(3-5순위) 중등이하교(중등이하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포함)</li> </ul> </li> </ul>						
4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사업 내용별 우선순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순위) 장비·기자재 사업</li> <li>(4-2순위) 시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 &gt; 리모델링 &gt; 신·증축 &gt; 매입</li> </ul> </li> <li>(4-3순위) 운영비 사업</li> <li>(4-4순위) 학교법인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용기본재산 &gt; 수익사업체</li> </ul> </li> <li>(4-5순위) 대한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사업 내용별 우선순위 적용 후 동순위 시 대출금리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배정</li> </ul> </li> </ul> </li> </ul>						
5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상기 우선순위 적용 후 동순위 사업은 심사점수(상환능력평가+가감점)가 높은 순으로 배정</li> </ul>						

#### 2 배정액 결정 기준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사업 유형 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액\*의 최소 50%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배정 비율을 차등 적용

\* 단, 신청사업의 연도별 투자(집행) 계획에 따른 '26년도 예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배정 비율은 용자신청 현황과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3 담보조건부 용자 대상교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 시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담보조건부 용자 지원

구분	담보 조건	
공통	- 상환능력평가 산출식에 따른 <b>차입금의존율</b> 이 상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인 및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법인·교비회계 합산 차입금의존율 50%	법인·병원회계 합산 차입금의존율 100%
대학	-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인 대학 중 <b>최근 3년 정원 내 학생 충원율(신입생, 재학생) 80% 미만 이력이 있는 대학</b> - 교육부와 법무부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b>비자정밀 심사대학(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b>	
중등이하	- 상환능력평가 결과 40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교	

※ 신용용자 대상이라도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 시 담보조건부 용자로 지원할 수 있음

### 4 배정 및 지급 관련 기타 유의사항

- **(배정 단위)** 용자 배정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정함
- **(배정효력 상실제)** 용자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미청구된 용자금은 배정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며, **용자금 배정연도 6월 말까지 계약 미체결 등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관련 인허가 미승인 등으로 연내 자금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배정 효력이 상실됨**
- **(배정 후 조건 변경)** 용자 배정 후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등 상환능력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 단계에서 신용용자에서 담보조건부 등으로 용자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배정 후 지급 단계에서 용자조건 변경 시 용자심사위원회에 사후 보고

- **(추가배정)** 추가배정 시 해당연도 7월 1일(신청 접수일 기준) 이후 자금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약이 기 체결된 것에 한해 용자 배정 가능**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정의**

- 시설공사(신·증축, 개보수 등) : 시공계약 체결
- 장비·기자재(시스템 포함) : 물품구매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구축 계약 등
- 교지매입 : 매매계약 체결
- 대환대출 : 대출약정서 체결

- **(용자금 지급제한)** 관할청으로부터 사학기관으로 통지, 언론보도 등에 의해 사학기관 비리 등 문제 발생 시 **용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4 용자 사후관리 계획

### 1 서면조사

- **(정기)** 용자금을 수령한 사학기관은 집행내역을 상·하반기 각 1회(연 2회)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은 사학기관이 용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업별 추진현황 및 완료 여부 등을 조사
- **(수시)** 재단은 필요할 경우 사학기관에 수시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조사

### 2 현장조사

- **(정기)** 5~6월 중 전년도 용자 지원된 학교를 대상으로,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용자 신청·청구 시 제출된 서류 원본과의 일치 여부, 용자지원 사업 운영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 **(수시)** 재단은 사학비리 발생교 및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과 용자금 지급 적정성 검토 등 사학진흥기금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3 기타사항

- **(재정지원사업 사후관리)** 용자 배정 사업이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인 경우, 용자금과 재정지원 사업비 간의 혼용, 동일 항목에 이중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용자지원 사업 성과관리)** 용자금이 배정된 사업의 성과계획(목표)은 용자금 사용기간 내 달성하도록 권장하고, 실적 파악은 기존 집행점검 시 병행



사업 제도  
개선 사항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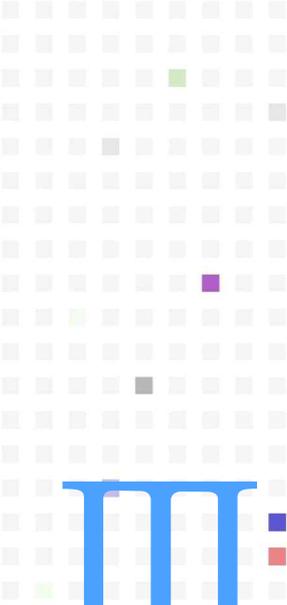
# 전년 대비 제도 개선 사항

개선 항목	기존	개선																								
① 예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218,063백만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세부사업</th> <th>내역사업</th> <th>사업예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td> <td>일반 용자</td> <td>45,223백만원</td> </tr> <tr> <td>정원증원 의대 용자</td> <td>172,840백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218,063백만원</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예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	일반 용자	45,223백만원	정원증원 의대 용자	172,840백만원	합 계	218,06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178,646백만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세부사업</th> <th>내역사업</th> <th>사업예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td> <td>일반 용자</td> <td>178,646백만원</td> </tr> <tr> <td>정원증원 의대 용자</td> <td>(내역사업 종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178,646백만원</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예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	일반 용자	178,646백만원	정원증원 의대 용자	(내역사업 종료)	합 계	178,646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예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	일반 용자	45,223백만원																								
	정원증원 의대 용자	172,840백만원																								
	합 계	218,063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예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	일반 용자	178,646백만원																								
	정원증원 의대 용자	(내역사업 종료)																								
	합 계	178,646백만원																								
② 예산 배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용자와 의대용자를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 비율 별도 설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자 구분</th> <th>교육여건 개선</th> <th>재정여건 개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용자</td> <td>60%</td> <td>40%</td> </tr> <tr> <td>의대용자</td> <td>70%</td> <td>30%</td> </tr> </tbody> </table>	용자 구분	교육여건 개선	재정여건 개선	일반용자	60%	40%	의대용자	7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대 <b>내역사업 구분 폐지 및 전체 사업 예산을 사업 분야에 따라 배분 원칙</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환경개선 용자</th> <th>정책지원 용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body> </table> <p>※ 배분비율은 용자 신청 현황,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p>	환경개선 용자	정책지원 용자	40%	60%											
용자 구분	교육여건 개선	재정여건 개선																								
일반용자	60%	40%																								
의대용자	70%	30%																								
환경개선 용자	정책지원 용자																									
40%	60%																									
③ 지원 사업 유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야</th> <th>세부사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교육여건 개선사업</td> <td>미래교육 환경개선</td> </tr> <tr> <td>교육환경 안전강화</td> </tr> <tr> <td>교육지원사업</td> </tr> <tr> <td>교육특화지원</td> </tr> <tr> <td rowspan="4">재정여건 개선사업</td> <td>사립대 구조개선</td> </tr> <tr> <td>수익용 기본재산확충</td> </tr> <tr> <td>운영비 지원</td> </tr> <tr> <td>대환대출</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미래교육 환경개선	교육환경 안전강화	교육지원사업	교육특화지원	재정여건 개선사업	사립대 구조개선	수익용 기본재산확충	운영비 지원	대환대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야</th> <th>유형</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환경개선 용자</td> <td rowspan="2">혁신 선도</td> <td>시설개선, 장비·기자재 등 교육 환경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 등</td> </tr> <tr> <td>고등교육발전과 신산업 및 정부 주력산업 분야 인프라 투자 사업</td> </tr> <tr> <td rowspan="3">정책 지원 용자</td> <td>지역 발전</td> <td>지역 상생,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 사업</td> </tr> <tr> <td>구조 개선</td> <td>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시설· 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등 사업</td> </tr> </tbody> </table>	분야	유형	세부 내용	환경개선 용자	혁신 선도	시설개선, 장비·기자재 등 교육 환경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 등	고등교육발전과 신산업 및 정부 주력산업 분야 인프라 투자 사업	정책 지원 용자	지역 발전	지역 상생,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 사업	구조 개선	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시설· 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등 사업
분야	세부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미래교육 환경개선																									
	교육환경 안전강화																									
	교육지원사업																									
	교육특화지원																									
재정여건 개선사업	사립대 구조개선																									
	수익용 기본재산확충																									
	운영비 지원																									
	대환대출																									
분야	유형	세부 내용																								
환경개선 용자	혁신 선도	시설개선, 장비·기자재 등 교육 환경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 등																								
		고등교육발전과 신산업 및 정부 주력산업 분야 인프라 투자 사업																								
정책 지원 용자	지역 발전	지역 상생,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 사업																								
	구조 개선	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시설· 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등 사업																								
	④ 용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한도) 법인+학교+부속병원 용자 배정액 총합 <b>연 250억원</b></li> <li>(누적지원금) - 산출식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sup>1)</sup> - 용자신청 마감일 용자금 잔액<sup>2)</sup></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상위25% 이내</th> <th>상위50% 이내</th> <th>상위75% 이내</th> <th>상위75%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900억원</td> <td>800억원</td> <td>700억원</td> <td>600억원</td> </tr> </tbody> </table> <p>1) 교육용 기본재산 장부가액 + 병원 재산 장부가액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p> <p>2) 법인+교비+병원회계 용자금 잔액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만 포함)</p>	상위25% 이내	상위50% 이내	상위75% 이내	상위75% 초과	900억원	800억원	700억원	6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연도) 법인+학교+부속병원 용자 배정액 총합 연 <b>300억원</b></li> <li>- 상환능력평가 상위 50% 이상 : 300억원</li> <li>- 상환능력평가 하위 50% 이하 및 중등이하교 : 200억원</li> <li>(누적지원금) - &lt;좌 동&gt;</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대학 설치·경영 법인</th> <th>중등이하 학교만</th> </tr> </thead> <tbody> <tr> <td>상위25% 이내</td> <td>상위50% 이내</td> <td>상위75% 이내</td> <td>상위75% 초과</td> <td>설치·경영 법인</td> </tr> <tr> <td>&lt;좌동&gt;</td> <td>&lt;좌동&gt;</td> <td>&lt;좌동&gt;</td> <td>&lt;좌동&gt;</td> <td>500억원</td> </tr> </tbody> </table> <p>2) 법인+교비+병원회계 용자금 잔액(25년도 정원증원 의대용자 및 병원 필수요로 용자 지원액 제외)</p>	대학 설치·경영 법인				중등이하 학교만	상위25% 이내	상위50% 이내	상위75% 이내	상위75% 초과	설치·경영 법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00억원
상위25% 이내	상위50% 이내	상위75% 이내	상위75% 초과																							
900억원	800억원	700억원	600억원																							
대학 설치·경영 법인				중등이하 학교만																						
상위25% 이내	상위50% 이내	상위75% 이내	상위75% 초과	설치·경영 법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00억원																						

개선 항목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는 한시적사업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 (누적지원금 및 당해 용자지원 한도액 산출 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대용자 내역 사업 폐지로 <b>&lt;삭제&gt;</b></li> </ul>								
⑤ <b>이자율 차등화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용자와 의대용자 차등 적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76 488 874 622"> <thead> <tr> <th>일반용자</th> <th>의대용자</th> </tr> </thead> <tbody> <tr> <td>&lt;기준금리&gt; 재단 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른 분기별 변동금리 <b>연 2.42%</b>(25년 3/4분기준)</td> <td><b>연 1.5%</b></td> </tr> </tbody> </table>	일반용자	의대용자	<기준금리> 재단 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른 분기별 변동금리 <b>연 2.42%</b> (25년 3/4분기준)	<b>연 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용자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b></li> </ul> <table border="1" data-bbox="903 488 1414 622"> <thead> <tr> <th>일반용자</th> <th>학교법인 수익사업 용자 및 해당 사업의 대환대출</th> </tr> </thead> <tbody> <tr> <td><b>&lt;좌 동&gt;</b></td> <td><b>기준금리에 0.2%p 가산금리 적용</b></td> </tr> </tbody> </table>	일반용자	학교법인 수익사업 용자 및 해당 사업의 대환대출	<b>&lt;좌 동&gt;</b>	<b>기준금리에 0.2%p 가산금리 적용</b>
일반용자	의대용자									
<기준금리> 재단 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른 분기별 변동금리 <b>연 2.42%</b> (25년 3/4분기준)	<b>연 1.5%</b>									
일반용자	학교법인 수익사업 용자 및 해당 사업의 대환대출									
<b>&lt;좌 동&gt;</b>	<b>기준금리에 0.2%p 가산금리 적용</b>									
⑥ <b>수익금 특약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금 관련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사업 (대환대출 포함) → 용자지원사업 발생한 수익금의 80% 이상 학교 전출(대학설립운영규정 준용)</li> </ul> </li> <li><b>&lt;신 설&gt;</b></li> <li>※ <b>&lt;신 설&gt;</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금 관련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b>또는 수익사업 (대환대출제외)</b> → 용자지원사업 발생한 수익금*의 80%** 이상 학교 전출</li> <li>* 수익금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입력 외 별도 기준에 의함</li> <li>** 전출 비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용</li> </ul> </li> <li><b>대환대출 사업 용자 수혜로 발생한 이자 절감액* 교육환경 재투자</b></li> <li>※ <b>특약사항 미이행 시 용자금 회수, 담보 (추가) 설정 등 제재 가능</b></li> </ul>								
⑦ <b>배제/ 담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제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근 3년 정원내 신입생총원을 또는 정원내 재학생총원을 <b>평균 70% 미만교</b></li> <li>② <b>학교(캠퍼스) 이전 사업 중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b></li> <li>③ <b>&lt;신 설&gt;</b></li> </ol> </li> <li>담보 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학)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중 최근 3년 정원내 신입생 총원을 또는 재학생 총원을 <b>평균 80% 미만교</b></li> <li>② (공통) 학교이전사업(위치변경)의 경우 선취담보 조건으로 용자지원</li> </ol> <li>※ 단, 선취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용자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자 조건을 정함</li> <li>③ <b>&lt;신 설&gt;</b></li>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제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b>70% 미만 이력이 있는 학교</b></li> <li>② ----- -----<b>및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 사업</b></li> <li>③ <b>운영비 중 체불입금, 체납세금 등 확정 채무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b></li> </ol> </li> <li>담보 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 ----- -----<b>80% 미만 이력이 있는 학교</b></li> <li>② (공통) <b>&lt;좌 동&gt;</b></li> </ol> <li>※ <b>&lt;단서 삭제&gt;</b></li> <li>③ <b>"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비자정밀 심사대학</b></li> </li></ul>								

개선 항목		기존	개선																						
⑧	건축 적립금 제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 제한사항</li> <li>- (법인 및 교비회계) 건축적립금 합산액이 <b>1천억원 이상</b>인 대학은 용자신청사업에 적립금 활용 금액만큼 용자지원, <b>500억원 이상</b> 대학은 용자신청 사업비의 <b>70%까지 지원</b></li> <li>※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하며 대한 대출 사업은 적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 제한사항</li> <li>- <b>(교비회계) 임의건축적립금이 500억원 이상인 대학이 시설자금(신증개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으로 용자 신청 시 건축적립금 활용 금액 만큼 용자 지원</b></li> <li>※ &lt;좌 동&gt;</li> </ul>																						
⑨	부정 비리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제요건</li> <li>- 용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용자 배제사항 중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용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가. ~ 마. 생략</li> <li>※ &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제요건</li> <li>- &lt;좌 동&gt;</li> <li>가. ~ 마. 생략</li> <li>※ 단, 상환회계가 “부속병원회계”인 경우 병원장의 부정·비리에 대해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 적용</li> </ul>																						
⑩	가산점/ 감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학(전문대)혁신지원사업 선정: 5점</li> <li>② 법정부담금 부담률100% : 5점</li> <li>③ 기숙사비 카드결제 등 방식 도입교 : 5점</li> <li>④~⑥ &lt;신 설&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t;삭 제&gt;</li> <li>② &lt;좌 동&gt;</li> <li>③ &lt;삭 제&gt;</li> <li>④ 비수도권(10점) 또는 인구감소지역(15점)</li> <li>⑤ 지자체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사업(10점)</li> <li>⑥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과 관련한 사업 : 10점</li> </ol>																						
⑪	배정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해당연도 사업예산 50% 내에서 계속사업 최우선 배정</li> <li>• (2순위) 상환능력평가 상위 50% 이내 최근 3년 학생충원율 평균 90% 이상인 비수도권 대학</li> <li>• (3순위) 사업별/사업내 배정 우선순위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사업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교육 여건 개선</td> <td>(1순위) 미래교육환경개선</td> </tr> <tr> <td>(2순위) 교육환경안전강화</td> </tr> <tr> <td>(3순위) 교육지원</td> </tr> <tr> <td>(4순위) 교육 특화지원</td> </tr> <tr> <td rowspan="4">재정 여건 개선</td> <td>(1순위) 사립대 구조개선</td> </tr> <tr> <td>(2순위) 수익용기본재산 확충</td> </tr> <tr> <td>(3순위) 운영비지원</td> </tr> <tr> <td>(4순위) 대환대출</td> </tr> </tbody> </table>	분야	사업별	교육 여건 개선	(1순위) 미래교육환경개선	(2순위) 교육환경안전강화	(3순위) 교육지원	(4순위) 교육 특화지원	재정 여건 개선	(1순위) 사립대 구조개선	(2순위)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3순위) 운영비지원	(4순위) 대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순위) '25년도 정기배정 시 '26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b></li> <li>※ '26년을 끝으로 계속사업 제도 종료('26년도 부터 신규 계속사업 미선정)</li> <li>• <b>(2순위) 사업 유형별 우선순위 적용</b></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환경개선 용자</th> <th>정책지원 용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사업 유형</td> <td>환경개선 용자</td> <td>(1순위) 혁신선도 용자</td> </tr> <tr> <td></td> <td>(2순위) 지역발전 용자</td> </tr> <tr> <td></td> <td>(3순위) 구조개선 용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 유형 내 계약체결 사업 우선배정</b></li> <li>• <b>(3순위) 지원 대상별 우선순위 적용</b> [신설]</li> <li>- (1순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li> <li>- (2순위)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li> <li>- (3순위) 부속병원(협력병원 제외)</li> <li>- (4순위) 평생법 원격대학 또는 전공대학</li> <li>- (5순위) 중등이하교</li> </ul>	분야	환경개선 용자	정책지원 용자	사업 유형	환경개선 용자	(1순위) 혁신선도 용자		(2순위) 지역발전 용자		(3순위) 구조개선 용자
분야	사업별																								
교육 여건 개선	(1순위) 미래교육환경개선																								
	(2순위) 교육환경안전강화																								
	(3순위) 교육지원																								
	(4순위) 교육 특화지원																								
재정 여건 개선	(1순위) 사립대 구조개선																								
	(2순위)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3순위) 운영비지원																								
	(4순위) 대환대출																								
분야	환경개선 용자	정책지원 용자																							
사업 유형	환경개선 용자	(1순위) 혁신선도 용자																							
		(2순위) 지역발전 용자																							
		(3순위) 구조개선 용자																							

개선 항목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순위) 사업 내 배정 우선순위에서 “계약 체결사업” 최우선 배정</li> <li>• (5순위) 동순위 사업은 심사점수(상환능력평가+가감점)가 높은 순으로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순위) 사업 내용별 우선순위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장비·기자재 사업</li> <li>- (2순위) 시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 &gt; 리모델링 &gt; 신·증축 &gt; 매입</li> </ul> </li> <li>- (3순위) 운영비 사업</li> <li>- (4순위) 학교법인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용기본재산 &gt; 수익사업체</li> </ul> </li> <li>- (5순위) 대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환대출도 위 사업 내용별 우선순위 적용, 동순위 시 대출금리가 높은 사업 우선 배정</li> </ul> </li> </ul> </li> <li>• <b>(5순위) &lt;좌 동&gt;</b></li> </ul>
⑫	배정 비율 원칙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계약 체결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액*의 최소 50% 이상** 배정을 원칙</b> ※ 배정비율은 신청결과 등에 따라 용자심사위 조정 가능</li> </ul>
⑬	배정 후 담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 설&gt; (용자지급 후 상환능력 하락 시 조건변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급 전 단계 조건변경) 용자 배정 후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등 상환능력 하락 시 담보조건부 등으로 용자조건 변경 가능</b></li> </ul>



# 사업 신청방법

(KASFO 용자시스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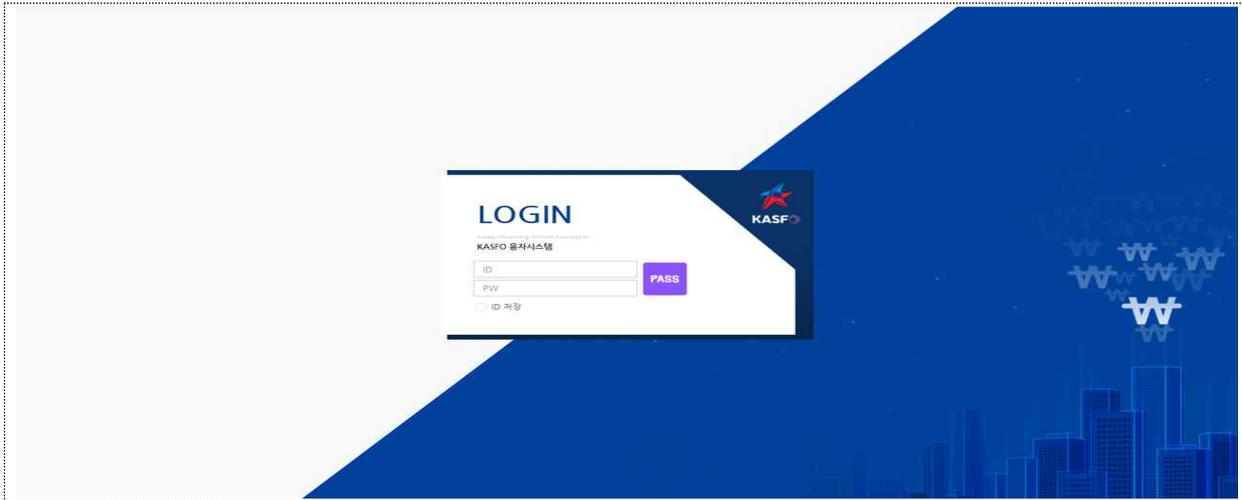
# 1 사업 신청 절차



## 2 사용자신청서 작성 방법

1 KASFO 사용자시스템 접속(<http://main.kasfo.or.kr>)

2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법인 및 학교(병원) 모두 가능)



※ 최초 용자 신청교의 경우 재단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아이디 생성

3 사용자신청서 작성

(1단계) 용자신청에서 배정연도 2026년 선택 후 [신청서작성] 클릭

선택	배정연도	예산명	신청차수	신청구분	신청기간 시작일	신청기간 종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6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	1	경기신청	2025-09-17	2025-12-31

1 목록에서 배정연도 2026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 선택

2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2단계) 용자신청 팝업화면에서 용자신청서 작성

※ 1.용자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담당자 인적사항 → 4.첨부파일 순으로 작성

### [1. 용자신청서] ※ 재단으로 제출하는 용자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① 용자금을 신청하는 학교 선택

② 사업내역의 [+] 버튼을 클릭하여 용자 신청사업 생성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 버튼 추가 클릭)

③ 용자금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업명 작성

④ 용자금 사업 유형을 혁신선도 용자/지역발전 용자/구조개선 용자/환경개선 용자 중 선택

⑤ 용자금 신청 사업의 용도에 따라 교육용/수익용 중 선택

⑥ 용자금 신청 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기자재/운영비/대환대출 중 선택

⑦ (신청금액) 용자금 신청사업의 당해연도 용자신청액을 백만원 단위로 작성  
(사업예산(총사업비)) 용자금 신청사업의 총사업비를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⑧ 운영비 용자\* 이외의 모든 용자 신청사업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상환기간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

\* 운영비 용자는 최대 5년 내에서 거치/상환기간 선택

⑨ 용자금 신청사업의 원리금 상환회계를 교비회계/법인회계/부속병원회계 중 선택

⑩ 세부유형이 "교육용"인 경우 "변동(기준금리)" 선택, "수익용"인 경우 "변동(가산금리)" 선택  
※ 가산금리 = 기준금리+0.2%p

⑪ [서식1] 용자사업 신청서에 날인한 스캔 파일 업로드

## [2. 사업계획서]

**1** 사업1: (혁신선도 융자사업) - Si기반 방산시스템 연구환경 조성

**2** 사업명: Si기반 방산시스템 연구환경 조성  
 용도: 신중속  
 사업추진단계: 설계완료  
 사업구분: 연구사업  
 사업기간: 2025-09-25 ~ 2026-08-25  
 신청사유기재: (사업배경) Si 기술을 적용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국방 연구과제 특성상 보안·고성능 연산 환경이 요구되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 연구시설이 미비함  
 (개선 필요성) 방위산업의 첨단화·지능화를 위해서는 Si 기반 데이터 처리, 자율무기체계 검증, 사이버·전자전 대응 기술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연구환경이 필요함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사업예산: 5,000,000,000 원  
 사업위치: 41069 주소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한국사학진흥재단  
 건축면적: 2,500 평 토지구획 사업의 경우 건축면적외에 토지면적 기재  
 추진경과 및 일정: 2025.09: 설계 완료 및 사업 착수  
 2025.11: 인허가 절차 및 시공사 선정  
 2025.12: 착공 및 주요 기자재 발주  
 2026.07: 주요 공정 마무리 및 연구환경 구축 완료, 시운전 실시

**3** 사업이용자

선택	순번	학과	수혜자수	비고
	1	인공지능학과	120	연구실습, 캡스톤디자인 활용
	2	컴퓨터공학과	150	사태데이터 실습 교과목 활용

**4** 시설면적 증가정도

선택	No.	구분	신청사업 전 면적 (A)	신청사업 후 면적 (B)	면적(C=B-A)	증가정도 비율(%) (C/A)
	1	건물	0	2,500	2,500	0

**5** 심사반영항목

선택	No.	심사반영항목
	1	비수도권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관심지역 제외) 소재 대학(비수도권)
	2	지자체 및 지역주력산업기관의 협력(사업 선정, 협약 체결) 사업

**6** 추진단계별 증빙문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계약방법제출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Q	다음로또
2	공통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Q	다음로또
3	공통 첨부자료	자체사업계획서	Q	다음로또
4	기자재사업	구매견적서	Q	다음로또
5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Q	다음로또
6	기자재사업	통용영서서	Q	다음로또
7	기자재사업	자산등록명세서(대장)	Q	다음로또
8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Q	다음로또
9	시설사업	공사계약서	Q	다음로또
10	시설사업	설계계약서	Q	다음로또
11	시설사업	설계도면	Q	다음로또
12	시설사업	일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Q	다음로또
13	시설사업	항공신고서(필증)	Q	다음로또
14	이전사업	관할청 이전승인서	Q	다음로또
15	토지구획	용기부등본	Q	다음로또
16	토지구획	매여계약서	Q	다음로또
17	토지구획	지적도	Q	다음로또

- ①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을 선택하여 모두 입력
- ② 선택된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업예산, 추진경과 및 일정 등 입력  
 ※ 사업 추진 이유를 현재(당시) 상황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기술
- ③ 사업에 따른 이용 대상자 현황 입력(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 운영비는 작성 제외
- ④ 시설 또는 토지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증가 면적을 입력
- ⑤ 심사 가감점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  
 ※ 가산점 항목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 ⑥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를 첨부

### [3. 담당자 인적사항]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titled '용자신청' (User Application).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인적사항', and '필부파일'. Below the tabs is a '사업선택' (Business Selection) dropdown menu with the selected value '사업1: (혁신선도 용자사업) - AI기반 방산시스템 연구환경 조성'. To the right of the dropdown are buttons for '저장' (Save) and '초기화' (Reset). Below this is the '용자 담당자 인적사항' (Applicant Information) section, which is circled in red and labeled with a '2'. This section contains fields for address (주소), contact information (전화, 팩스, E-mail), and job details (직/성명, 부서, 교육재정지원부, 직위, 책임, 성명, 안유진). Below that is the '상환담당자 인적사항' (Supervisor Information) section, also circled in red and labeled with a '3'. It contains similar fields for address, contact information, and job details (직/성명, 부서, 교육재정지원부, 직위, 주무, 성명, 강원영). A '담당자 정보복사' (Copy Supervisor Information) button is located to the right of this section. A '1' is also present near the top left of the form area.

- ①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을 선택하여 모두 입력
- ② 용자 신청 담당자 현황 입력
- ③ 용자 신청 담당자와 상환 담당자가 같은 경우 우측 [담당자 정보복사]를 클릭하고, 같지 않은 경우 상환 담당자 현황 입력
- ④ [저장] 버튼 클릭하여 정보 저장 (다른 사업도 동일하게 입력)

#### 4. 첨부파일



- ①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을 선택하여 모든 자료 업로드
- ② 사업계획서, 부채 현황,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부정·비리사항에 대한 확인서, 회계별 미지급금 변동현황,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 등 사업별 필수 제출자료 서식을 [첨부파일 양식]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업로드  
※ 업로드 오류 등으로 직접 등록 불가 시 재단 업무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이메일로 파일 송부
- ③ 각 사업의 추진단계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
- ④ [저장] 버튼 클릭(이후 다른 사업도 동일하게 입력)

#### 4 신청서 제출

- 사용자신청서 메뉴에서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 인적사항], [첨부파일]을 모두 입력한 이후 저장된 용자신청서를 제출



- ① 용자신청서 메뉴 중 [용자신청 처리조회] 클릭
- ② 입력한 세부사업 현황의 [작성완료여부] "Y", [오류여부] "N" 상태임을 확인  
※ [오류여부]가 "Y"인 경우 우측 오류 사유 확인 후 보완 조치 필요
- ③ 용자신청 사업을 선택 후 [제출] 버튼 클릭



※ 작성방법 (KASFO용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일반현황

- [법인명][소재지] 용자금을 신청하거나 신청교(병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명 및 소재지(주소) 작성
- [학교명(병원명)][소재지] 용자금을 신청하는 학교 또는 부속병원의 명칭과 소재지(주소) 작성

◦ 신청금액(총합)

- 용자금을 신청하는 모든 사업의 용자 신청액 총합을 백만원 단위로 작성

◦ 사업개요

- 용자신청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내역(총 7개 항목)]을 아래에 행 추가 하여 사업별로 작성
- [사업명] 용자금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업명 작성
- [사업유형] 용자금 신청사업의 유형을 혁신선도 용자/지역발전 용자/구조개선 용자/환경개선 용자 중 선택  
※ 사업유형 구분은 2026년도 용자사업 지원계획 p. 4 참조

- [세부유형] 용자금 신청사업의 기본 속성에 따라 교육용/수익용 중 선택

- [사업구분] 용자금 신청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기자재/운영비/대환대출 중 선택

- [신청금액]

(용자액) 용자금 신청사업의 당해연도 용자신청액을 백만원 단위로 작성

(총사업비) 용자금 신청사업의 총사업비를 백만원 단위로 작성

※ 용자액과 총사업비 산출의 근거자료(계약서, 견적서, 과년도 운영비 집행 내역 등) 별도 제출 필요

- [용자기간] 운영비 용자\* 이외의 모든 용자 신청사업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상환기간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

\* 운영비 용자는 최대 5년 내에서 거치/상환기간 선택

- [상환회계] 용자금 신청사업의 원리금 상환회계를 교비회계/법인회계/부속병원회계 중 선택

- [금리구분] <세부유형>이 "교육용"인 경우 "기준금리 적용" 선택, <세부유형>이 "수익용"인 경우 "기준금리 +0.2%p 가산" 선택

◦ 법인 경영학교

- 학교법인이 경영 중인 대학, 중등이하고, 유치원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6개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쪽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신청인

-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경우 신청인은 "이사장"만 작성·날인하고, 그 외는 "이사장"과 "학교장(병원장)"을 모두 작성·날인





※ 작성방법 (KASFO용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① [사업명] 용자금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업명 작성
- ② [사업유형] 용자금 신청사업의 유형을 혁신선도 용자/지역발전 용자/구조개선 용자/환경개선 용자 중 선택  
※ 사업유형 구분은 2026년도 용자사업 지원계획 p. 4 참조
- ③ [세부유형] 용자금 신청사업의 기본 속성에 따라 교육용/수익용 중 선택
- ④ [사업용도] 용자금 신청사업의 용도에 따라 개·보수/리모델링(대수선)/신·증(개)축/매입(구입) 중 선택
- ⑤ [사업추진단계] 시설(토지·건물)사업과 장비(기자재)사업을 구분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를 선택
  - (시설\_건물) 용자금 신청사업이 "건물"의 개보수, 신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시된 7개 항목 중 해당하는 단계 선택
  - (시설\_토지) 용자금 신청사업이 "토지"의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제시된 2개 항목 중 해당하는 단계 선택
  - (학교이전) 앞서 선택한 "건물" 또는 "토지" 사업이 "학교(캠퍼스)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 관할청의 이전 승인 여부를 선택  
※ 용자 배제 :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사업
  - (장비) 용자금 신청사업이 "장비(전산 인프라 포함)" 도입에 해당하는 경우 제시된 2개 항목 중 해당하는 단계 선택
- ⑥ [시설구분]
  - (교육용) 용자 신청사업이 "시설(토지·건물)사업"이면서 위 ③[세부유형]에서 "교육용"을 선택한 경우, [시설구분] "교육용"에 제시된 5개 항목 중 해당하는 시설 종류를 선택  
※ 시설종류 선택 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시설 구분을 따름
  - (수익용) 용자 신청사업이 "시설(토지·건물)사업"이면서 위 ③[세부유형]에서 "수익용"을 선택한 경우, [시설구분] "수익용"에 제시된 2개 항목 중 해당하는 시설 종류를 선택
  - (기타) 용자 신청사업이 "장비(기자재) 사업"인 경우 [시설구분]은 "장비(기자재)" 선택
- ⑦ [사업기간] 용자 신청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작성(당해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전체 기간)
- ⑧ [사업예산] 용자 신청사업의 "총사업비"와 "당해 사업비"를 백만원 단위로 작성
  - (총사업비) 용자 신청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예산으로 단연도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비와 같을 수 있음
  - (당해 사업비) 2026년도 용자 신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액으로, 용자 신청액이 아님(용자금, 자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을 포함한 '26년도 사업예산을 뜻하며 용자 신청액 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음)
- ⑨ [사업위치] 용자 신청사업에 해당하는 건물 신축, 장비 도입 등이 적용되는 위치를 "교내", "교외" 중 선택하고, 세부 위치를 "사업장 주소"에 작성
- ⑩ [사업규모] 용자 신청사업이 "시설(토지·건물) 사업"이면서 "건물"인 경우 시공 면적과 층수를, "토지"인 경우는 토지 면적만 작성하고, 용자 신청사업이 "장비(기자재) 사업"인 경우 신규도입(교체) 수량을 작성

2] 사업계획

- ① [사업배경] 용자 신청사업의 추진 이유를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사업내용] 용자 신청사업 내용을 건물, 토지, 장비(기자재)에 따라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건물) 용자 신청사업이 "건물" 관련 사업인 경우 각 층(개보수인 경우 시공이 적용되는 층)별 주 사용자(학과), 면적, 사용 용도를 작성
  - (토지) 용자 신청사업이 "토지" 관련 사업인 경우 필지(지번)별 면적과 용도를 작성
  - (장비·기자재) 용자 신청사업이 "장비·기자재" 사업인 경우 각 장비명과 도입 수량, 장비의 용도를 작성
- ③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용자 신청사업의 현재(용자 신청일)까지 추진 경과와 사업 완료까지의 향후 일정(계획)을 작성  
※ 시공(매매)계약체결,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주요 추진 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 ④ [투자계획] 1]사업개요-7]사업기간, 8]사업예산 작성 내용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투자계획을 연도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 정보(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비 수혜액, 수행기간, 사업조건(자부담매칭 등)) 별도 제출 필요
- ⑤ [예산수입] 1]사업개요-3]세부유형이 "수익용(법인)"인 경우만, 수익용재산(사업) 운영으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수입을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3] 투자효과

- ① [이용자 수] 용자 신청사업(건물, 장비 등)의 이용자(수혜자) 수를 학과별, 건물별 등 사업 특성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구분에 따라 작성(미확정인 경우 예상치로 작성)

② [시설/장비 증가 수준] 용자 신청사업 완료 전후 시설물(토지) 면적, 장비 수량 등의 증감 수준을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사업 진행 중인 경우 예상치로 작성)

4] 성과목표

① [성과목표] 용자 신청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기대효과)를 기술

② [성과지표] 위 ①[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용자신청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본 성과지표는 용자금의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달성 여부를 서면·현장조사를 통해 점검 예정

5] 가산점·감점

- 용자 신청기관 및 신청 사업에 해당하는 가산점과 감점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가산점"으로 선택한 항목의 증빙자료 별도 제출(감점 증빙자료는 재단이 확보 예정)

**[서식②-2] 사업계획서\_운영비**

사업계획서		운영비						
<b>1</b> 사업 개요	① 사업명	사업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						
	② 사업유형 <small>(☑선택)</small>	<input type="checkbox"/> 혁신선도 <input type="checkbox"/> 지역발전 <input type="checkbox"/> 구조개선 <input type="checkbox"/> 환경개선						
	③ 사업용도 <small>(☑선택)</small>	<input type="checkbox"/> 인건비(명예퇴직금) <input type="checkbox"/> 제세·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장비)유지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④ 사업추진단계 <small>(☑선택)</small>	<input type="checkbox"/> 계획(구상,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⑤ 사업기간	<b>[용자금 사용기간] [YYYY-MM-DD] ~ [YYYY-MM-DD]</b> ※ 운영비 사업기간은 용자사업연도(2026년도) 회계기간(~'27.2.28.)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사업예산	<b>[총사업비] [            ]백만원</b>						
<b>2</b> 사업 계획	① 사업배경	사업 추진 이유를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기술						
	② 사업내용	<b>[운영비 집행계획]</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백만원)</span>						
		연번	운영비 항목	운영비 산출	운영비 총액 (A)*	집행시기 (예상)	용자금 집행 예정액 (B)**	용자금 비율 (B/A)
		1	인건비	수량 x 단가 x 기간	0000	'26.5월	0000	00%
2	세금							
3	(기타)							
		합계		(합계)*		(합계)**		
		* 운영비 총액의 합계 1)사업개요-6)사업예산의 "총사업비"와 같아야 함 ** 용자금 집행 예정액의 합계는 당해연도 용자신청액과 같아야 함						
③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b>3</b> 성과 목표	① 성과목표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기대효과)를 기술						
	② 성과지표	※ "①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 <b>[성과지표]</b>						
		연번	지표명	산출 방식	성과목표 현재 ('25년,A)    목표 (B)    증감 (B-A)	측정 시기	비고	
1	신입생 증원율	입학생 수/모집정원	85%	90%	+5%	'27년 상반기		
2								
<b>4</b> 가산점· 감점 <small>(☑선택)</small>	가 산 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 충족(+5점)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 대학(+10점) <input type="checkbox"/>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15점)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및 지역 주력 산업기관과의 협력 사업(+10점) <input type="checkbox"/>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과 관련한 사업(+10점) ※ 가산점 항목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감 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2년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 2에 따른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사학기관 (△10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2년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 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사학기관 (△1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초과 장기연체 실적이 있는 사학기관(△10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이하 단기연체 실적이 있는 사학기관(△5점)			

※ 작성방법 (KASFO용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① [사업명] 용자금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업명 작성
- ② [사업유형] 용자금 신청사업의 유형을 혁신선도 용자/지역발전 용자/구조개선 용자/환경개선 용자 중 선택  
※ 사업유형 구분은 2026년도 용자사업 지원계획 p. 4 참조
- ③ [사업용도] 용자금 신청사업의 용도에 따라 인건비(명예퇴직금)/제세·공과금/시설(장비)유지비/기타 중 선택
- ④ [사업추진단계] 용자금 신청사업의 추진 단계에 따라 계획(구상,완료)/진행 중 2개 항목 중 해당하는 단계 선택
- ⑤ [사업기간] 용자 신청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작성  
※ 운영비 사업기간은 용자사업연도(2026년도) 회계기간(~'27.2.28.)을 초과할 수 없음
- ⑥ [사업예산] 용자 신청사업의 "총사업비"를 작성(총사업비는 용자 신청액보다 크거나 같음)  
※ 운영비 항목이 인건비인 경우 당해연도 교직원 인건비 총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 가능

2] 사업계획

- ① [사업배경] 용자 신청사업의 추진 이유를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사업내용] 용자금을 신청하는 운영비의 집행계획을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운영비 총액의 합계는 "총사업비"와, 용자금 집행 예정액의 합계는 "용자금 신청액"과 같아야 함
- ③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용자 신청사업의 현재(용자 신청일)까지 추진 경과와 사업 완료까지의 향후 일정(계획)을 작성  
※ 예: 운영비가 명예퇴직금인 경우 학과 통합결정일,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기간, 명예퇴직자 확정일자, 명예퇴직금 지급 예정일 등 주요 추진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3] 성과목표

- ① [성과목표] 용자 신청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기대효과)를 기술
- ② [성과지표] 위 ①[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용자신청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본 성과지표는 용자금의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달성 여부를 서면·현장조사를 통해 점검 예정

4] 가산점·감점

- 용자 신청기관 및 신청 사업에 해당하는 가산점과 감점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가산점"으로 선택한 항목의 증빙자료 별도 제출(감점 증빙자료는 재단이 확보 예정)





※ 작성방법 (KASFO용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① [사업명] 용자금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업명 작성
- ② [사업유형]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의 유형을 혁신선도 용자/지역발전 용자/구조개선 용자/환경개선 용자 총 4개 항목 중 선택  
※ 사업유형 구분은 2026년도 용자사업 지원계획 p. 4 참조
- ③ [세부유형]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기본 속성에 따라 교육용시설·장비/수익용기본재산/수익사업/운영비 총 4개 항목 중 선택
- ④ [사업용도]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용도에 따라 개·보수/리모델링(대수선)/신·증(개)축/매입(구입)/인건비(명예퇴직금)/제세·공과금/시설(장비)유지비/기타 총 8개 항목 중 선택
- ⑤ [사업추진단계]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단계를 진행 중/완료 2개 항목 중 선택  
- (학교이전) 기존 대출금의 목적사업이 "학교(캠퍼스)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 관할청의 이전 승인 여부를 선택  
※ 대한대출이라도 학교(캠퍼스) 이전 사업인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사업은 용자 배제 대상에 해당함
- ⑥ [사업기간]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총 사업기간을 작성(종료된 사업은 과거 사업기간 작성)
- ⑦ [사업예산]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백만원 단위로 작성  
※ 대출 목적사업에 투입된 전체 사업예산
- ⑧ [사업위치]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건물 신축, 장비 도입 등이 적용된 위치를 "교내", "교외" 중 선택하고, 세부 위치를 "사업장 주소"에 작성

2] 사업계획

- ① [사업배경]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이유를 현재(당시) 상황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사업내용]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내용을 건물, 토지, 장비(기자재) 또는 운영비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건물) 용자 신청사업이 "건물" 관련 사업인 경우 각 층(개보수인 경우 시공이 적용되는 층)별 주 사용자(학과), 면적, 사용 용도를 작성  
- (토지) 용자 신청사업이 "토지" 관련 사업인 경우 필지(지번)별 면적과 용도를 작성  
- (장비·기자재) 용자 신청사업이 "장비·기자재" 사업인 경우 각 장비명과 도입 수량, 장비의 용도를 작성  
- (운영비 집행계획) 용자 신청사업이 "운영비" 사업인 경우 항목별 집행액을 구체적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 ③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현재(용자 신청일)까지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계획)을 작성  
※ 시설사업은 시공(매매)계약체결,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주요 추진 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 운영비(명예퇴직금)인 경우 학과 통합결정일,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기간, 명예퇴직자 확정일자, 명예퇴직금 지급 예정일 등 주요 추진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3] 투자효과

- ※ [사업개요-③세부유형이 "운영비"인 경우 작성 제외, 그 외 사업은 기존 대출금의 목적이 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① [이용자 수] 대출 목적사업(건물, 장비 등)의 이용자(수혜자) 수를 학과별, 건물별 등 사업 특성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구분에 따라 작성(미확정인 경우 예상치로 작성)
- ② [시설/장비 증가 수준] 대출 목적사업 완료 전후 시설물(토지) 면적, 장비 수량 등의 증감 수준을 사업계획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예상치로 작성)

4] 기존 대출 현황

- ※ 대한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아래에 행을 추가하여 ①금융기관명 ~ ⑥관할청의 기채 신고수리 정보를 대출 건별로 모두 작성
- ① [금융기관명] 기존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명 작성
- ② [대출금액] ③ [대출기간] 기존 대출 약정서상의 대출금액(백만원 단위) 및 대출기간을 작성
- ④ [대출금리] 기존 대출의 최신 대출금리와 해당 금리가 적용된 기준일자를 작성
- ⑤ [대출잔액] 용자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을 백만원 단위로 작성
- ⑥ [관할청의 기채 신고수리 정보] 기존 대출에 대한 관할청의 신고수리(승인) 정보 작성

5 이자절감액 활용계획

- ① [이자절감액] 기존 대출금을 사학진흥기금 용자로 대한 함으로써 절감(예상)되는 이자액을 연도별 표로 작성 (총 절감액 별도 표기)
- ② [활용계획] 위 ①[이자절감액]의 활용계획을 작성(교비 전출, 운영비 재투자로 기숙사비 인하 등)

6 성과목표

- ① [성과목표] 용자 신청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기대효과)를 기술
- ② [성과지표] 위 ①[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용자신청서 서식에 제시된 표로 작성
  - ※ 본 성과지표는 용자금의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달성 여부를 서면·현장조사를 통해 점검 예정

7 가산점·감점

- 용자 신청기관 및 신청 사업에 해당하는 가산점과 감점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가산점"으로 선택한 항목의 증빙자료 별도 제출(감점 증빙자료는 재단이 확보 예정)

**[서식③] 부채 현황**

<b>부채 현황</b>										
(단위: 천원)										
용자 상환회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법인회계 】 <input type="checkbox"/> 【 교비회계 】 <input type="checkbox"/> 【 병원회계 】										
차입 재원	차입처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 주기	연이율	차입 원금	기상환액	결산잔액 (A)	결산이후 증감액 (B)	신청일 기준 잔액(C)
법인 회계			년 거치 년 상환		%					
	소계									
교비 회계			년 거치 년 상환		%					
	소계									
병원 회계			년 거치 년 상환		%					
	소계									
<b>합 계</b>										

**※ 작성방법**

- 부채 현황은 '25년 3월 1일부터 용자 신청일 현재('25년 10월)까지의 내역을 작성
- [용자 상환회계] 당해연도 용자 신청사업의 상환회계를 선택
- [차입재원] 용자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경우 "법인회계"의 차입금 내역, <교비회계>인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차입금 내역, <병원회계>인 경우 "법인회계"와 "병원회계"의 차입금 내역 작성
- [차입처][차입일][상환기간][상환주기][연이율][차입원금] 차입금 항목별 차입처,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주기(매월, 분기별 등), 차입금의 연 이율(용자신청일 기준 차입금리) 및 차입 원금(총액) 작성
- [기상환액] 차입금 항목별 '24회계연도 말일 기준 이미 상환을 완료한 원금 총액
- [결산잔액] 차입금 항목별 '24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금액(차입원금에서 기상환액을 제외한 금액과 같아야 함)
- [결산이후 증감액] '24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용자 신청일 현재까지 차입금 변동분\* 작성
- \* '24회계에 반영된 차입분 중 신청일 기준 상환한 금액은 -000으로, 추가차입은 +000로 기재
- \* '24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25년 3월 1일 후 차입분은 +000로 기재
- [신청일 기준 잔액] 용자신청일 현재 차입금 잔액을 작성(결산 잔액에서 결산 이후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과 같아야 함)

**[서식④]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단위: 천원)

용자 상환회계  :                     
  【 법인회계 】                     
  【 학교회계 】                     
  【 병원회계 】

차입 재원	구분	차입처	차입내용 (사업명)	차입일 및 상환기간	총 차입금	원리금 상환계획												총 상환액	
						상환 재원	상환 재원 세부 내용	~'25년까지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법인회계	① 기존 차입 현황	1	국민은행	2캠퍼스 기숙사 신축	20.1.1. 5년거치 5년상환	8,5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2	한국사학 진흥재단	2캠퍼스 기숙사 신축	20.1.1. 5년거치 5년상환	1,5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3			차입일 상환기간		000,000											000,000	
		소계(A)																	
	② 금회 용자 신청 현황	1	한국사학 진흥재단	2캠퍼스 기숙사 신축	5년거치 5년상환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2	한국사학 진흥재단	수익용 건물 매입	상환기간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소계(B)					00,000												
	합계(A+B)																		(총 상환액)
	③ 상환 재원	법인 전입금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수익사업 전입금				/													
기부금				/															
수업료 수익				/															
합계				/														(총 상환액)	

교 회 계	① 기존 차입 현황	1	국민은행	2캠퍼스 기숙사 신축	'20.1.1. 5년거치 5년상환	8,5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2	한국사학 진흥재단	2캠퍼스 기숙사 신축	'20.1.1. 5년거치 5년상환	1,5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3			차입일 상환기간		000,000												000,000
		소계(A)																	
	② 금회 용자 신청 내역	1	한국사학 진흥재단	2캠퍼스 기숙사 신축	5년거치 5년상환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2	한국사학 진흥재단	수익용 건물 매입	상환기간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소계(B)					00,000												
		합계(A+B)																	
	③ 상환 재원	법인 전입금					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수익사업 전입금																	
기부금																			
수업료 수익																			
합계					00,000														
병 원 계	① 기존 차입 현황	1	국민은행	2캠퍼스 기숙사 신축	'20.1.1. 5년거치 5년상환	8,5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2	한국사학 진흥재단	2캠퍼스 기숙사 신축	'20.1.1. 5년거치 5년상환	1,5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3			차입일 상환기간		000,000												000,000
		소계(A)																	
	② 금회 용자 신청 내역	1	한국사학 진흥재단	2캠퍼스 기숙사 신축	5년거치 5년상환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2	한국사학 진흥재단	수익용 건물 매입	상환기간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소계(B)					00,000												
		합계(A+B)																	
	③ 상환 재원	법인 전입금					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수익사업 전입금																	
기부금																			
수업료 수익																			
합계					00,000														

※ 작성방법

- [용자 상환회계] 용자 신청사업의 상환회계를 선택 (기존 차입금의 상환 재원이 아닌, 금회 사학진흥기금 용자 신청액의 상환회계 기준)
- [차입재원] 용자 신청사업의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경우, 차입재원의 [법인회계]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작성하고,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에, 상환회계가 "부속병원 회계"인 경우는 [법인회계]와 [병원회계]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각각 작성

※ 차입금 반영 대상

- 교비회계 : 결산서(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계상액
- 법인회계
  - (일반회계) 결산서(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계상액
  - (수익사업회계) 결산서(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계상액
- 부속병원회계 : 결산서(재무상태표) 장기차입금 + 외화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미지급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계상액

- ① [기존 차입 현황]

[차입처][차입내용][차입일 및 상환기간][총 차입금(천원)] 용자 신청일 현재 기준의 회계별 차입 현황(서식③ "부채현황"에 반영된 모든 내역)을 작성  
[원리금 상환계획] 각 차입 건별, 상환기간 동안의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을 천원 단위로 작성

- ② [금회 용자신청 현황]

[차입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작성

[사업명][상환기간][총 차입금(천원)] 금회 용자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용자사업명, 용자기간(거치,상환기간), 용자신청액을 작성

[원리금 상환계획] 금회 용자신청사업의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을 천원 단위로 작성

※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 > "용자 원리금 상환 계산기" 활용 가능

- ③ 상환 재원

[상환 재원 세부내용] 위 ①[기존 차입현황] 및 ②[금회 용자신청현황]에 작성한 차입액을 어떤 재원으로 상환하는지 그 세부내용\*을 작성

\* 세부내용은 회계구분이 아닌 "자금의 구체적 출처"로 수익사업(A빌딩 임대료) 수익금, 등록금 수입, 설립자 기부금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원리금 상환계획] 상환 재원별, 전체 차입액의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을 천원 단위로 작성

※ ①[기존 차입현황] 및 ②[금회 용자신청현황]의 총 상환액 합계와 ③[상환재원]별 총 상환액 합계가 일치해야 함

**[서식⑤]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b>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최근 2년)</b>						
<b>사 업 명</b>						
<b>대학/법인/병원명</b>						
<b>대상 기간</b>	20〇〇년 〇월 〇일 ~ 용자 신청일 현재					
<b>부정·비리 유무*</b>	<b>감사처분**</b>	<b>행정처분***</b>	<b>형사판결****</b>			
	유/무	유/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padding: 2px;">확정 전</th> <th style="padding: 2px;">확정</th> </tr> <tr>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유/무</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유/무</td> </tr> </table>	확정 전	확정	유/무
확정 전	확정					
유/무	유/무					
<p>* 학교의 장, 학교법인 임원, 부속병원의 장이 당해 학교·법인·병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b>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b></p> <p>** 감사원·교육부 등의 기관에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p> <p>***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중등이하교의 경우 관련법령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p> <p>**** <b>[확정 전] “유(有)” 표기 사항 : 부정·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 형사처벌(금고 이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항고 또는 상고·재항고 중인 경우</b></p> <p>※ 중등이하교가 용자 신청한 경우 교육청 등 관할기관의 감사·행정처분에 해당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b>20〇〇. 〇〇. 〇〇.</b></p> <p>본인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용자 신청일 현재까지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필요시, 세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p> <p>상기 확인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붙임]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 내역 1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학교법인 〇〇 이사장/                  〇〇대학교 총장/                  〇〇병원 원장             </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〇 〇 〇 (인)             </td> </tr> </table>		학교법인 〇〇 이사장/ 〇〇대학교 총장/ 〇〇병원 원장	〇 〇 〇 (인)			
학교법인 〇〇 이사장/ 〇〇대학교 총장/ 〇〇병원 원장	〇 〇 〇 (인)					
<b>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귀하</b>						

**[붙임]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 내역**(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

구분	연번	공문 제목	문서 번호	시행 일자	대상	내용	비고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중징계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1	00000 000000	00-123	2024.6.2	총장	해임	교육부
	2						감사원
	3						
	4						
	5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1	00000 000000			-	정원 감축	1회
	2						
	3						
	: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금고형 이상)	1	사건명	사건번호	2024.8.7	총장	징역 1년	확정 전 (1심)
	2				이사장	-	확정 전 (2심)
	3						
	:						
진행 중인 재판	1	사건명	사건번호	2024.8.7	총장	-	1심 진행 중
	2				이사장	-	확정 전 (수사 중)

※ 작성방법

1)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부정·비리 주체 및 유형, 정도에 대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정·비리주체) 학교의 장, 학교법인의 임원, 부속병원의 장 등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주요 보직자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 (부정·비리유형)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사·학사·연구비·산단·기자재·시설 등, 부속병원회계 인사·약제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계약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가 해당
- (부정·비리정도) 감사처분의 경우 '중징계'이상, 행정처분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판결의 경우 '금고형'이상(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포함)

2) 제출한 내용의 허위, 누락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를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제출된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공문 등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부터 최종 선정 이전까지의 기간 중 부정·비리 사안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식⑥] 회계별 미지급금(비용) 변동 현황**

회계별 미지급금(비용)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용자 상환회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법인회계 】 <input type="checkbox"/> 【 교비회계 】 <input type="checkbox"/> 【 병원회계 】					
회계 구분	미지급 내역	결산상 금액(A)	신청일 기준 지급 총액(B)	미지급 잔액 (A-B)	미지급 잔액 존재 사유
법인회계					
교비회계 (등록금)					
교비회계 (비등록금)					
부속병원 회계					
합계					

※ 작성 방법

- [용자 상환회계] 당해연도 용자신청액의 상환회계를 선택
- [회계구분] 용자금 상환 자원(회계)이 "법인회계"인 경우 <법인회계>만 작성, "교비회계"인 경우 <법인회계>, <교비회계>를 작성, <부속병원회계>인 경우 <법인회계>, <부속병원회계>를 작성
- [미지급내역] [결산상 금액] '24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대학·법인은 부속명세서 <미지급명세서> 상의 내역을, 부속병원은 <미지급금명세서>, <미지급비용명세서> 상의 내역을 작성
- [신청일 기준 지급 총액] 용자신청일 현재 기준 미지급금 해소 금액 작성
- [미지급금 잔액 존재 사유] 용자신청일 현재 기준 [미지급 잔액]이 0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작성

**[서식⑦] 자산 보유 현황**

<b>자산 보유 현황(학교법인)</b>					
(단위 : 천원)					
용자 상환회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법인회계 】 <input type="checkbox"/> 【 교비회계 】 <input type="checkbox"/> 【 병원회계 】					
구분	자산 유형	자산(재산) 내용	금액(평가액)	담보제공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고
법인 회계	< 예 시 > 토지 (A)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건물 (B)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금 (C)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D)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		담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b>합계(A+B+C+D+...)</b>			<b>000,000</b>		

※ 작성 방법  
 - '24회계연도 결산 기준 학교법인의 자산에 대해 담보 설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법인 자산 보유 상태에 따라 상기 표 서식을 수정 가능)

**[서식⑧]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

※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한해 작성함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			
구분	취임기간	이사현황	비고
정이사	00.00.00~00.00.00	(8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정이사	00.00.00~00.00.00	(9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윤00	
정이사	00.00.00~00.00.00	(8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자격상실*
이사부존재	00.00.00~00.00.00	-	
임시이사	00.00.00~00.00.00	(8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임시이사**
임시이사	00.00.00~00.00.00	(9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윤00	
이사부존재	00.00.00~00.00.00	-	
정이사	00.00.00~00.00.00	(9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윤00	정상화***
* 관련 교육부 행정제재 확정 통지 공문 증빙제출 ** 임시이사의 선임 관련 관할청 승인 공문 증빙제출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관할청 승인 공문 증빙제출			
상기 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으며,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b>2000. 00. 00</b>			
<b>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      0 0 0 (인)</b>			

※ 작성 대상  
 용자 신청일 기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 FAQ

IV



# FAQ

## 1 용자신청 관련 질문/답변

**Q1 : 한 학교에서 두 개 이상 용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용자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1 : 두 가지 이상 사업을 신청할 시 당해연도 용자지원은 개별 학교 기준이 아닌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신청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00억원을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50% 이하인 경우와 중등이하교는 최대 200억원 지원

**Q2 : 용자지원 한도 및 용자심사를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각각 적용하나요?**

A2 : **본교와 캠퍼스는 합산하되 분교는 분리하여 심사**합니다.

**Q3 : 용자신청 시 관할청의 기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3 : 용자신청 단계에서 기채허가는 필요 없으며, 용자배정 이후 용자금 청구 시 관할청 기채허가 또는 기채신고 수리(담보대상교의 경우 담보제공 허가 포함)를 받아 승인 문서(공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 학교 이전사업의 경우 용자신청 시 사전에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4 : **학교 이전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고 용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① 학교이전으로 위치변경(이전) 계획에 대한 승인 → ② 이전(등기완료) → ③ 위치변경(이전) 인가 신청 → ④ 위치변경(이전)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할 외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학교 폐지 및 신설로 현재 소재지의 관할청에서 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이전예정 소재지의 관할청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사업은 용자 신청 불가

**Q5 : 대환대출사업의 경우 외부 차입금은 모두 대상이 되는지요?**

A5 : 외부 차입금의 용도가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첨부서류로 관할청 기채허가서(리스 대환 시 제외), 대출약정서, 차입확인서(대출잔액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속병원의 리스(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대환대출 신청 가능

**Q6 : 용자금을 배정받은 이후 배정금액 전액을 한번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6 : 배정받은 용자금은 일부(분할) 또는 일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부 청구하는 경우는 배정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급 받은 용자금은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 완료 시(예 : 준공 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7 : 용자금을 배정받은 후 즉시 자금을 집행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 용자금의 사용 시기는 용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 까지로 **긴급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선 지출하고 용자금을 받은 이후 대체 처리** 하면 됩니다.

**Q8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를 비등록금회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용자신청 후 용자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자금을 차입할 경우, 그 용자금 차입 및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8 :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차입금을 세입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차입은 교육시설 신·증축, 교육용 집기비품 구입 등 학교의 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출금' 계정(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을 통해 차입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단, 기채허가 중 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만 전출 가능

**Q1 : 사용자 신청을 위한 KASFO 사용자시스템 사용자 등록(신규)은 어떻게 하나요?**

A1 : 최초 사용자 신청하는 학교(법인) 담당자의 경우 교육재정지원부 담당자 확인을 거쳐 ID를 생성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신청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담당자(☎053-770-2525~7)에게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사용자의 경우, 등록된 아이디와 비번 사용

※ 법인 담당자가 법인 및 학교(병원) 담당자 ID 생성 가능

**Q2 : 사용자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A2 : 사용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학교 사용자가 [사용자신청] 메뉴에서 사용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신청 처리조회] 메뉴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한 후 [제출]버튼을 선택하면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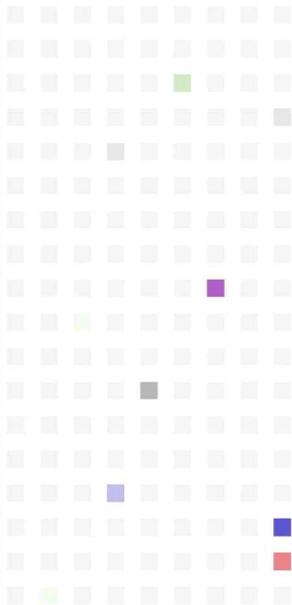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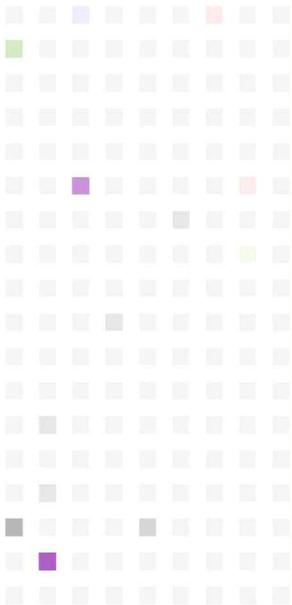
※ 법인/학교/병원 구분 없이 사용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Q3 : KASFO 사용자시스템에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A3 : 시스템에서 모두 입력하고 제출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법인 이사장 및 학교(병원)장의 날인이 된 사용자신청서, 부정·비리 확인서, 임시이사 법인의 임원 변동 현황은 서류(스캔본)를 반드시 신청기한 내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그 외 문서들은 KASFO 사용자시스템에 등록 후 공문 별도 제출 불요





# 2026년도 응자사업 심사표

별첨



## ▣ 대학(교비회계)

# 용 자 심 사 표

< 대학(교비회계) >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전공대학

구 분		배 점 기 준			
상환 능력 평가 지표 (100점)	1 학생등록률 추세 (20점,△)	[학교](학부)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 모집정원			
		{Min(((2025년도 신입생총원율×3+2024년도 신입생총원율×2+2023년도 신입생총원율×1) ÷ 6), 100%) ÷ 100%} × 10점			
		[학교](학부) 정원내 재학생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Min(((2025년도 재학생총원율×3+2024년도 재학생총원율×2+2023년도 재학생총원율×1) ÷ 6), 100%) ÷ 100%} × 10점			
	2 등록금의존율 (10점,▼)	[학교](자금계산서)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제외) ÷ 운영수입			
		상위 75% (10점)	초과	상위 75% 이내 (7점)	상위 50% 이내 (4점)
	3 차입금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①+②)20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기본재산 규모 (10점,△)	[법인+학교+병원]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토지,건물*) + 병원재산 장부가액(토지,건물*)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건물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장부가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5 적립금 규모 (10점,△)	[법인+학교]적립금 총액 + 이월금 총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6 차입금 의존율 (10점,▼)	[법인+학교]차입금 ÷ 기본금			
		상위 75% 초과 (10점)	상위 75% 이내 (7점)	상위 50% 이내 (4점)	상위 25% 이내 (1점)
	7. 운영이익 (20점,△)	[학교](자금계산서) 최근 3년 운영수입 평균 - 최근 3년 운영지출 평균			
		상위 25% 이내 (20점)	상위 50% 이내 (15점)	상위 75% 이내 (10점)	상위 75% 초과 (5점)
	감점(-40점)	①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1차 위반			
		(-10점)		(-15점)	
	가산점(50점)	①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사학기관		② 비수도권 소재 대학	
(5점)		(10점)			
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 관련 사업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10점)		(15점)			
		④ 지자체 및 지역 주력 사업 기관과의 협력 사업			
		(10점)			
총 계		7개 항목 100점 만점			

## ▣ 대학(법인회계)

# 용자심사표

< 대학(법인회계) >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전공대학

구 분		배 점 기 준			
상환 능력 평가 지표 (100점)	1 수입 대비 지출 비율 (10점,▼)	[법인](자금계산서) 운영지출 ÷ 운영수입			
		상위 75% 초과 (10점)	상위 75% 이내 (7점)	상위 50% 이내 (4점)	상위 25% 이내 (1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①+②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3 운영차액규모 (10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기본재산 규모 (20점,△)	[법인] 운영수입 - 운영지출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5 적립금 규모 (10점,△)	[법인+학교+병원]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토지,건물) + 병원재산 장부가액(토지,건물)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건물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장부가액			
		상위 25% 이내 (20점)	상위 50% 이내 (15점)	상위 75% 이내 (10점)	상위 75% 초과 (5점)
6 차입금 의존율 (10점,▼)	[법인]적립금 총액 + 이월금 총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7. 운영이익 (20점,△)	[법인+학교]차입금 ÷ 기본금				
	상위 75% 초과 (10점)	상위 75% 이내 (7점)	상위 50% 이내 (4점)	상위 25% 이내 (1점)	
감점(-40점)	[법인](자금계산서) 최근 3년 운영수입 평균 - 최근 3년 운영지출 평균				
	상위 25% 이내 (20점)	상위 50% 이내 (15점)	상위 75% 이내 (10점)	상위 75% 초과 (5점)	
가산점(50점)	①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1차 위반		①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10점)		(-15점)		
	③ 최근 3년 30일 초과 장기연체 실적이 있는 사학기관		④ 최근 3년 30일 이하 단기연체 실적이 있는 사학기관		
가산점(50점)	①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사학기관		② 비수도권 소재 대학		
	(5점)		(10점)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④ 지자체 및 지역 주력 사업기관과의 협력 사업		
(10점)		(15점)			
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 관련 사업					
(10점)					
총 계	7개 항목 100점 만점				

## ▣ 대학(부속병원회계)

# 용 자 심 사 표

< 대학(부속병원회계) >

대학

구 분		배 점 기 준			
상환 능력 평가 지표 (100점)	1 영업이익률 (10점,△)	[병원](손익계산서) 의료이익 ÷ (자금계산서)의료수입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2 유동비율 (10점,△)	[병원](대차대조표) 유동자산 ÷ 유동부채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①+②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③)(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이자배상비율 (10점,△)	[병원](손익계산서)의료이익 ÷ (자금계산서)이자비용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5 기본재산 규모 (10점,△)	[법인+학교+병원]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토지,건물) + 병원재산 장부가액(토지,건물)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건물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장부가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6 적립금 규모 (10점,△)	[법인+병원] 법인(적립금 총액 + 이월금 총액) + 병원(장기금융상품 + 투자유가증권)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7 차입금 의존율 (10점,▽)	[법인+병원]차입금 ÷ 기본금(법인 기본금+ 병원 총자본)				
	평균 75% 미만 (10점)	평균 100% 미만 (7점)	평균 125% 미만 (4점)	평균 125% 이상 (1점)	
8 운영이익 (20점,△)	[병원](자금계산서) 최근 3년 의료수입 평균 - 최근 3년 의료비용 평균				
	상위 25% 이내 (20점)	상위 50% 이내 (15점)	상위 75% 이내 (10점)	상위 75% 초과 (5점)	
감점 (-40점)	①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1차 위반				
	(-10점)	(-15점)	(-10점)	(-5점)	
가산점 (50점)	①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사학기관		② 비수도권 소재 대학		
	(5점)	(10점)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10점)		(15점)	④ 지자체 및 지역 주력 사업기관과의 협력 사업 (10점)	
총 계		8개 항목 100점 만점			

## ▣ 중등이하(초·중·고)

# 용 자 심 사 표

< 중등이하(초·중·고등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 분		배 점 기 준			
상환 능력 평가 지표 (100점)	1 재산 및 사업 수입비율 (10점,△)	[법인]((재산수입+사업수입) ÷ 총세입)×100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00% 이상 (7점)	평균 75% 이상 (4점)	평균 75% 미만 (1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20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3 재산 및 사업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10점,▽)	[법인]상환기간 중 연간 최대 원리금 상환금액 ÷ (재산수입 + 사업수입)			
		평균 75% 미만 (10점)	평균 100% 미만 (7점)	평균 125% 미만 (4점)	평균 125% 이상 (1점)
	4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 (10점,▽)	[법인+학교] 차입금 총액 ÷ 기본재산 총액			
		{1—Min(해당 중등법인의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 100%)} × 10점			
	5 운영차액 규모 (10점,△)	[법인] 세입 - 세출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25% 미만 (7점)	평균 100% 미만 (4점)	평균 75% 미만 (1점)
6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10점,△)	[법인]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Min(해당법인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 100%} × 10점				
7 세입 규모 (10점,△)	[법인]총세입 - 차입금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00% 이상 (7점)	평균 75% 이상 (4점)	평균 75% 미만 (1점)	
8 이월금 규모 (10점,△)	[법인] 세입 중 이월금 규모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00% 이상 (7점)	평균 75% 이상 (4점)	평균 75% 미만 (1점)	
9 차입금 의존율 (10점,▽)	[법인+학교]차입금 ÷ 총세입				
	평균 75% 미만 (10점)	평균 100% 미만 (7점)	평균 125% 미만 (4점)	평균 125% 이상 (1점)	
감점(-40점)	①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1차 위반				
	(-10점)	(-15점)	(-10점)	(-5점)	
가산점(50점)	①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사학기관				
	(5점)	(10점)	(15점)	(10점)	
	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 관련 사업				
(10점)					
총 계	9개 항목 100점 만점				

## ▣ 중등이하(유치원)

# 용 자 심 사 표

< 중등이하(유치원) >

유치원

구 분		배 점 기 준			
상환 능력 평가 지표 (100점)	1 정원 내 재원율 (10점,△)	[유치원] (총 원아수 ÷ 인가정원)×100 { Min(해당유치원의 정원내 재원율, 100%) ÷ 100% } × 10점			
	2 재산 및 사업 수입 비율 (15점,△)	[법인]((재산수입+사업수입) ÷ 총세입)×100			
		평균 125% 이상 (15점)	평균 100% 이상 (12점)	평균 75% 이상 (9점)	평균 75% 미만 (6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20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수익용기본재산	[법인]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Min(해당법인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 100%} × 15점			
	5 세입규모 (15점,△)	[법인]총세입 - 차입금			
		평균 125% 이상 (15점)	평균 100% 이상 (12점)	평균 75% 이상 (9점)	평균 75% 미만 (6점)
6 이월금규모 (15점,△)	[법인] 세입 중 이월금				
	평균 125% 이상 (15점)	평균 100% 이상 (12점)	평균 75% 이상 (9점)	평균 75% 미만 (6점)	
7 차입금의존율 (10점,▼)	[법인+유치원]차입금 ÷ 총세입				
	30% 미만 (10점)	40% 미만 (7점)	50% 미만 (4점)	50% 이상 (1점)	
감점(-40점)	①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1차 위반		② 최근 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10점)		(-15점)		
가산점(50점)	①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사학기관		② 비수도권 소재 대학		
	(5점)		(10점)		
	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이행 관련 사업				
(10점)					
총 계		7개 항목 100점 만점			